

자동관세화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인가?

한농연 대외협력실

2004년 쌀 협상에서 12월 31일까지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 쌀 관세화유예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해 현재 정부는 UR농업협정문이 명확히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대국들의 이의제기가 가능하고 분쟁절차로 갈 경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다. 또한 일부에서는 2005년 1월 1일부터 관세화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자동 관세화로 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UR농업협정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견해차이가 있다. 이 글에서는 ‘과연 자동 관세화로 가는 것은 의무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농어연 제70차 월례연구발표회’에서 발표된 송기호변호사의 견해를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고 필자의 의견을 더하였다.

<편집자주>

이 글은 송기호 변호사의 『한국 쌀에 대한 특례조치 계속을 위한 WTO협상의 통상법적 구조』, ‘농어연 제70차 월례연구발표회 참고자료(2004.6.26)’를 재정리 한 것임을 밝힙니다.

또한, 이 글에서 제시하는 주장은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으며,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다만, 이 글에서 밝히고 있는 견해가 논리적으로 검증되어, 이번 쌀협상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를 바랍니다.

관세화유예는 한국에게 배운 은혜가 아니다

관세화유예(특례조치)란 농업협정에서 관세화를 예외로 하는 특례 및 우대조치이다. 이는 강대국이나 농산물수출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례 및 우대조치로써 이 법률

적 지위는 부차적이거나 주변부적인 것이 아니라 농업협정에서 절대 필요한 구성요소이다. 만약 이 관세화유예가 없다면 협상은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관세화유예는 UR협정문과 DDA협정문에 명시된 것처럼 식량주권, 환경보존이라는 농업의 본질적 요소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쌀에 대한 관세화유예는 한국에게 베푸는 '은혜'가 아니다.

협상은 2004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중단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관세화유예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 UR농업협정문(5.8절)에 명확히 명시된 것과 같이, 관세화유예는 다른 아닌 '협상'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4년 관세화유예 계속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2004년 12월 31일이 지나면 협상이 완전히 끝나는가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농업협정문 해석이 각 나라마다, 해석하는 이에 따라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종결 된다' 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마치 2004년이 지나면 협상이 자동으로 중단되고 다른 어떤 협상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해석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과 일본 등 많은 나라들과 국내 연구기관(농촌경제연구원), 학자들은 '완료 한다' 내지는 '완성해야 한다' 로 해석하고 있다. 즉 협상완료의 의미는 이해당사국에게 2004년까지 협상을 타결할 법적의무를 부여한 것이지, '자동으로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DDA농업협상 세부원칙(Modality)이 당초 2003년 3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하였으나 아직까지 타결되지 않고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협상타결의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가?

만약 협상이 2004년 내에 타결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협상타결의 의무는 한국만이 지는 것이 아니다. 농업협정의 의무는 모든 회원국에게 있다. 한국은 협상을 제의하였고, 협상안을 제시함으로써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UR농업협정 5.9절에 '농업협정상 우리가 관세화유예를 계속하려면 상대가 받을 만한 양보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에 대해 정확히 인식해야 할 것은, 한국에게 일방적인 양보를 하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수입해야 할 물량을 협상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즉, 상대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나라가 양허를 해야 하는데 상대국이 만족하지 못해 협상이 결렬 될 경우, 그 책임은 상대국을 만족시키지 못한 우리나라에 있다는 견해와, 관세화유예를 연장 받지 못한다는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 쌀 수출국들 사이의 의견대립이나 지나친 수입요구를 해 협상이 연내에 타결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협상타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수출국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WTO협상의 통상법적 해석에 따른 쌀 협상의 전제조건

1. 2004년이 지난다고 해서 협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2. 2004년 내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관세화로 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3. 협상 타결이 안 될 경우 어떻게 가야 할 지는 '협상'에서 결정한다.

자동적으로 관세화해야 할 의무는 없다

만약 2004년 내 쌀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일각에서는 자동관세화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 경우에 적용할 법적 조항이 없다.

WTO법은 한 나라의 법률과는 달리 나라 사이의 '협상'에 의해 만들어 진다. 따라서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련법이 없다. 다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한다.

만약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을 경우 미국 등이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 할 수 있는가? 제소할 수 없다. 왜냐하면 UR협정 해석상 타결되지 않은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유리한 쌀협상 시나리오

이제 두 달여 후면 쌀협상이 거의 마무리가 된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유리한 협상전술은 무엇인지, 앞에서 설명한 얘기들을 종합해서 고려해보자.

첫째, 2004년이 지난다고 해서 협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며, 둘째, 협상이 타결된다고 해서 자동관세화로 가야 될 의무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다. 셋째, 타결이 안 될 경우 어떻게 가야 할 지는 협상에서 결정한다. 이 세 가지 중요한 가설이 명백하고 타당한 논리가 된다면, 수출국들이 과도한 요구를 할 경우, 타결을 보지 않고 시간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시 말해 시간에 쫓겨 다급하고 불리한 요구를 다 짊어지고 갈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한 DDA농업협정

우리에게 유리한 쌀협상 시나리오

- DDA 농업협정 세부원칙(Modality)의 타결
- ⇒ 세부원칙에 기초해 관세화유예를 포함한 양허안 제출
- ⇒ 이해당사국들과 협상해서 개도국 지위 여부 결정
- ⇒ 한국 쌀협상 타결
- ⇒ 쌀 협상 결과를 반영한 한국 양허표 수정 및 검증
- ⇒ 모든 DDA타결
- ⇒ 새로운 농업협정체제 출범

의 세부원칙이 나와야 분명한 쌀협상에서의 실익을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음과 같은 전술이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만, 지난해 9월 칸쿤에서 제5차 WTO각료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이렇다 할 WTO 농업협상이 진전되지 못했다. 그러나 오는 7월 말이면 WTO농업협정 세부원칙의 큰 틀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부원칙의 큰 틀이 완성되고 나면 세부적인 원칙도 거의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쌀 협상에서의 실익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 경우 우리가 대응해 나갈 시나리오를 지금 보다 더 세밀하고 적극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

아울러, 내부협상도 챙겨야 한다. 현재 농민들

과 국민들은 협상이 언제, 어디서 진행됐는지는 보도를 통해 알고 있다. 하지만 어떤 대화가 오갔으며, 어떤 전술이 미흡했는지, 앞으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내부협상이란 바로 이런 협상의 내용들, 그리고 우리 쌀산업을 어떻게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것이다. **민농연**

DDA 농업협정 세부원칙(Modality)의 기본골격이 7월말쯤 마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쌀 관세화유예협상 실익을 명확히 분석하고 협상전술을 보다 세밀히 짚 필요가 있다. 또한 외부협상뿐만 아니라 내부협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